



제 1076 호

2012년 11월 23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2- 1750호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 공고 제2012- 1764호 건설업 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3
- 공고 제2012- 1769호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 안건 공고 5
- 공고 제2012- 1771호 도림아동센터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 6
- 공고 제2012- 1779호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통지 불능자에 대한 공고 16
- 공고 제2012- 1785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부과 통지 공고 17
- 공고 제2012- 1786호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18
- 공고 제2012- 1789호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 예고 통지 불능자에 대한
공고 19

고 시

- 고시 제2012- 123호 도로명주소 고시 20
- 고시 제2012- 12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도로)결정(폐지,
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24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750호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송달내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대 상

공시송달 내역				재산의 표시	대 상 자		
연 번	부과구분	부과기간	금액(원)		주민 등록번호	부과 대상자	주소
1	변상금 부과	2008.6.1~ 2012.7.10	27,512,54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92-27	640704 1*****	김정천	인천광역시 남구 길파로 29번길 84-1A동B04호(주 안동,대륙빌라)

3. 공고기간 : 2012.11.19 ~ 2012.12.4 (15일간)

4.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과 (☎ 032-453-2273)

2012년 11 월 19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764호

건설업 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를 위반하고 국세청 사업자 휴폐업 확인결과 폐업사실을 확인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하고 사업자장,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처분의 내용 : 건설업 등록말소

2. 처분의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3.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업 종	처분사유	등록말소 일자
인정토건(주)	김정두	인천 남동구 구월동1135-3, 701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남구2007-10-1) 토공사업(인천남구2006-2-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인천남구2007-13-1) 포장공사업(인천남구2006-16-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 -2012.09.24 실효 국세청 사업자 폐업사 실 확인 : 2012.10.15	2012. 11.12

4.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우리구에 반납하시기 바라며, 등록말소일 이후에 영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동법 제96조(벌칙)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대리인의 선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의 규정에 의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위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동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http://kiscon.net/>),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769호

부의안전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전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할 안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안 건 명

-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舊)만수2동 청사 사용료면제 동의안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가칭) “남동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2. 공고기간

- 2012. 11. 20 ~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종료 시까지

3. 기 타

- 부의안전의 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기획예산실(☎453-2094)에 비치하였으며, 또한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공람)이 가능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771호

도림아동센터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안)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도림아동센터에 대한 민간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민간위탁 대상시설 현황

구 분	도림아동센터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46
규 모	건물 연면적 : 590.79㎡ 건물 규 모 : 지하1층 / 지상 2층
개 관 일	2010. 2. 19 ~
주요시설	○ 지하1층(197.52㎡) : 기계실, 다목적프로그램실 2실 ○ 지상1층(175.32㎡) : 사무실, 드림스타트센터(사무실), 프로그램실 1실 ○ 지상2층(217.95㎡) : 소규모 도서관, 열람실 2실
위탁운영 사업내용	○ 시설물 관리 ○ 청소년·아동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 소규모 도서관 운영 등

2. 위탁기간 : 2년

3. 신청자격 : 아동,청소년 육성·보호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정관 또는 회칙 표기)

4. 신청자격 제외대상

- 『아동복지법』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 수탁체 명의만 가지고 수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수탁운영 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5. 위탁 운영 조건

- 위탁범위 : 도림아동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후원금 등 자체수입
- 종사자 보수 :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남동구 자체 기준으로 최저 임금 이상) 준용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수탁운영체가 도림아동센터 운영 재정을 부담 하여야 함.
- 수탁자는 도림아동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아동복지에 관한 법령,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아동 복지사업 추진계획,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위탁을 취소 할 수 있음.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 기간 : 2012. 11. 28 ~ 2012. 11. 30 (09:00 ~ 18:00)
- 교부처 : 남동구청 홈페이지(www.namdong.go.kr → 바탕화면 →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 신청서식 다운로드
- 접수처 : 남동구청 1층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팀 방문 접수
(우편접수 및 인터넷접수 불가)

○ 제출서류

- ① 위탁운영 신청서 1부(공고문 다운로드 신청서식 1)
- ② 법인·단체 소개서 1부(공고문 다운로드 신청서식 2)
- ③ 사업운영계획서 1부(공고문 다운로드 신청서식 3)

- ④ 운영비 자부담 계획표(공고문 다운로드 신청서식 4)
- ⑤ 법인·단체 등록증(정관·회칙 포함) 사본 1부
- ⑥ 법인등기부 등본 1부(해당 법인의 경우)
- ⑦ 법인·단체 자산현황 증빙서류 1부
- ⑧ 법인·단체 대표자 및 원장내정자 이력서(사진첨부) 1부
- ⑨ 아동·청소년 업무 활동 또는 사회봉사활동 실적서(사진첨부) 1부
- ⑩ 대표자(시설장 포함) 및 상근인력의 아동·청소년,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있는 경우 제출)
- ⑪ 위탁운영체 평가자료
- 신청서류 ①번부터 ⑩번까지를 번호순으로 1권의 책으로 제본(A4
규격)하여 15권 제출(원본 1권, 사본 14권 제출)
 - 부동산 관련 입증서류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 금융재산 및 부채증명서는 공고 기준일로 발급
- ※ 공고문 다운로드 신청서식(서식 1~서식 4)은 남동구청 홈페이지
(www.namdong.go.kr → 바탕화면 → 고시/공고란 → 공고문 첨부파일)에 게시

7. 지원사항 : 도림아동센터 운영비 보조

8. 민간위탁기관 선정 : 『인천광역시남동구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결정

9. 심사기준

심사기준 배 점	기관설립목적과 위탁사업과의 관련성 유무	사업계획 실천가능성	재정부담 능 력	위탁사업 추진경력	수탁기관 대표자의 관심도 및 의지
100점	10점	30점	20점	15점	25점

10. 수탁자 선정방법 및 통지

- 객관적 평가는 수치상 계량이 가능한 항목으로 제출 증빙서류에 의거 평가
- 주관적 평가는 신청법인 및 시설장의 자질, 수행능력,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
에서 객관적 심사가 곤란한 항목으로 심사위원이 평가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60점 이

상으로 함.(소수점 이하 3자리가 5이상이면 반올림 적용)

※ 총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주관적 평가점수를 높게 받은 기관으로 선정

- 신청자는 '인천시남동구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신청 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발표자는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로 한정하며 사전에 남동구청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팀 도림아동센터 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신청접수순으로 사업계획 설명 10분~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

【사업계획은 PPT설명으로 하며 PPT는 신청자가 작성하여 2012.12.05(수) 18:00까지 남동구청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팀으로 사전 제출】

※ 심사위원회 개최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 결과 점수가 동점이 나올 경우에는 원장의 전문성(1순위), 도림아동센터 운영 계획(2순위), 시설운영 실적(3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 '인천시남동구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로 지정

11. 민간위탁기관선정 결과 발표 : 2012. 12. 14(금).

※ 선정된 단체에 개별 통지 및 남동구청 홈페이지(www.namdong.go.kr → 바탕화면 → 고시/공고란)에 게시

12. 기타사항

- 위탁운영 계약은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함.
 - ※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별도로 협약할 수 있음
- 도림아동센터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심의일(추후통보)에 '인천시남동구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 위원회'에 출석하여 도림아동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불참 시에는 수탁의사가 없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보완 불가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함.
-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증빙서류의 날짜는 접수일로부터 최근 7일 이내의 서류만 인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팀(☎032-453-58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도림아동센터 상근자 자격기준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2조관련 별표12 】 기준 준용

직종별	자 격 기 준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무국장 (1명)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아동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종사자 (1명)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2.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3.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활용 가능자 4. 아동·청소년관련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5.. 준사서 이상의 사서 자격증 소지자 6. 학교, 도서관 등 사서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

[서식-1]

도림아동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법인·단체명		설립일자		등록관청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최종학력	주요경력	
법인 · 단체 현 황	설립목적					등록회원수
	2011년 2012년 중점사업	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 필요시 별지작성
	2011년 2012년 재정내역	총사업비(천원)	재원내역(천원)			비고
			회비	사업수입	외부지원	※ 필요시 별지작성
사회봉사활동 사업운영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장				사회봉사활동사업 실적	
	운영기간				※ 필요시 별지작성	
2012.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첨부서류		1. 법인(단체)소개서 1부. 2. 사업운영계획서 1부. 3. 도림아동센터운영비 자부담 계획표 1부. 4.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5. 법인단체 자산현황 증빙서류 및 법인단체 대표자 이력서 1부. 6. 아동·청소년활동 또는 사회봉사활동 실적서 1부				

[서식-2]

법인(단체) 소개서

법인(단체)명					
대표자	(예시) ○ 성 명 : 홍길동 ▶ 주요경력 -				
설립목적 (정관요약)					
주요사업 (정관요약)					
주요이력	예) 95.1.1. 창립 00.1.1 사단법인 설립인가				
조직구성	○ 회 원 명 ○ 임직원 명(이사 명, 감사 명, 직원 명)				
사무실 현 황	면적 m ² [자가(), 임대()]				
상근인력	순번	직위	성 명	주요업무	근무기간
	1				
	2				
	3				
	4				
국가(지방) 아동·청소년 위탁경력	순번	기간	위탁기관명	사 업 명	보조금액(천원)
	1				
	2				
	3				
자체아동·청소년 주요사업실적 (‘10-’11)	순번	기간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천원)
	1				
	2				
	3				

[서식-3]

사업운영 계획서

법인(단체)명	
사업명	
사업목적	
주요사업 및 사업목표	예시) ○ 아동심리치료 교실 운영(사업명) - 기간 : - 대상 : - 회수 : (예시) 주 2회,년중 또는 운영요일,시간 등 - 내용 : 간략히 기술 ○ 아동 미술교실 운영 - 기간 :
운영인력	○ 아동·청소년 관련 종사자 (아동,청소년 자격증소지 명) ○ 경력자 명 ○ 기 타 명

[서식-4]

도림아동센터 운영비 자부담 계획표

법인 (단체)명					
사 업 명					
총사업비	원[보조금 원(%), 자부담 원(%)]				
지출항목별 산출내역					
사업명	지출항목	금 액(천원)			산출내역
		계	구 보조금	자부담	
	총계		83,000		
민간 경상 보조	상근인건비		50,124		○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적용 - 시설장 1,539,000원×1명×12월=18,468천 원 - 종사자 2명 1,319,000원×2명×12월=31,656천 원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18,000		1,500,000원 × 12월 = 18,000천 원
	프로그램운영비		12,000		1,000,000원 × 12월 = 12,000천 원
	도서구입비		2,000		500,000원 × 4분기 = 2,000천 원
	시설유지비		876		876,000원 × 1식 = 876천 원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779호

대여용 사업용 자동차 직권말소등록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의거 대여사업용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이 접수되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이행치 않은 경우 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12. 11.22. ~ 2012. 12. 09.(18일간)
2. 공고 대상 자동차

공고 대상 자동차			내용	소유자	송 달 지	반송 사유
자동차번호	차명	소유자				
38허2914	로체	(유)전영령서영렌트카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통지	(유)전영령서영렌트카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수취인 불명
38허2916	로체					
38허2917	로체					
38허4606	쏘나타					

3. 문의처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032-453-2935)

2012. 11. 22.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7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공고기간 : 2012년 11월 23일 ~ 2012년 12월 10일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 통지			
2. 당사자	성명	공진숙(621028-2*****)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3. 부동산의 표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40-1 아트폴리스 1402호			
4. 위반내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5. 처분내용		○과태료부과 통지금액:금1,320,000원(금일백삼십이만원) ※ 납부대상자께서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시고, 해당 과태료를 2012.12.31.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법적근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 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7. 기타(문의처)		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부서명	토지정보과 (032-453-2485)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1008)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786호

부의안전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전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할 안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안 건 명

-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12. 11. 22 ~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종료 시까지

3. 기 타

- 부의안전의 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기획예산실(☎453-2094)에 비치하였으며, 또한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공람)이 가능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789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 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배달결과 : 2012.11.12 폐문, 2012.11.13 폐문, 2012.11.19 등기우편 반송]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12.12.13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저당)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2. 11. 23 ~ 2012. 12. 13.

2. 대상 자동차

신 청 대 상 차 량			이해관계내용	이 해 관계인	송 달 지
자 동 차 등록번호	성 명	사 용 본 거 지			
인천30너6377	박종길	인천. 남동. 인주대로	자동차 가압류 인천지방법원 95카단22755 압류일자:1995.10.16	이 완 회	충북 충주시 성내동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과 자동차등록팀 (☎453-2941)

2012. 11. 23.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2-12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1. 23.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548외 8건
- 변경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419번길 71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48번길 45-1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9건)						
변경 전 종전지번	변경 후 종전지번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변경 사유	비고
별 도 열 램(1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5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11. 2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83-5, 8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548	20090706	청량산 아랫마을에 능이 있었다는 것에 유래하여 제명	2012.11.23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청능대로 548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48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72-4, 872-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9	20091116	행정구역명(만수동)을 이용하여 만수로로 제명	2012.11.23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수로 9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9를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08-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1번길	39	20091116	용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11.23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용천로11번길 39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9를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53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54번길	15-6	20091116	논현고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11.23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논현고잔로54번길 15-6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5-6을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38-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277번길	50	20091116	남동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78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11.23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동로277번길 50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0을 건물번호로 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79-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31	20091116	남동대로의 서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2.11.23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서로 131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31을 건물번호로 부여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7-36, 107-3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25	20091116	만수로의 서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2.11.23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수서로 25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5를 건물번호로 부여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65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리미로7번길	16	20091116	도리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11.23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도리미로7번길 16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6을 건물번호로 부여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7-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1번길	3-12	20091116	앵고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42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11.23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앵고개로941번길 3-12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12를 건물번호로 부여	

남동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조서

연번	변경 전 종전지번			변경 후 종전지번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변경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8-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8-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419번길	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변경없음	2012.11.23	지번분할로 인한 종전지번 직권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48번길	45-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02-12	2012.11.23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48번길	4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02-13	2012.11.23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33번길	18-1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09-3	2012.11.23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33번길	18-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09-13	2012.11.23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46번길	3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67-5	2012.11.23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2-12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시장, 도로) 결정(폐지,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시장, 도로) 결정(폐지,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폐지, 변경)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11. 23.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주요내용

- ☐ 시 설 명 : 시장(석천자유시장)
- ☐ 위 치 : 남동구 간석동 313-1번지 일원
-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 조서
 - 가. 유통 및 공급시설(시장)
 - 1) 시장 결정(폐지)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	시 장	-	남동구 간석동 313-1번지 일원	3,150.1	감) 3,150.1	-	경고 제79-350호 (79.09.13)	

2) 시장 결정(폐지)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시장	·시장 폐지 ·면적 : 3,150.1㎡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장기능 상실과 주변 지역의 슬럼화 우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나. 교통시설(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3	8~13	국지도로	195	중3-47	소2-92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1	13	9~13	국지도로	195	중3-47	소2-92	일반 도로	-	-	-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 정 (변 경) 사 유
소로 1-13	소로 1-13	·폭원확대 (B=8m→9m)	·시장 폐지된 부지에 입지 가능한 건축물의 유발 교통량을 고려하여 폭원확대

2. 지형도면 : “별 첨”(게재생략)